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시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698
----------	------

발의년월일 : 2023. 7. 7.

발의의원 : 허시영, 권기훈,
김대현, 김정옥,
김지만, 김태우,
박종필, 이동욱,
이영애, 이태손,
정일균, 하병문,
하중환 의원
(13명)

1. 개정 이유

최근 타 시·도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록 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함에 따라 리스차량 등록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대구시도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여 안정적인 세수확보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철도채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하이브리드자동차 등록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를 전액 면제
(안 제3조제3항)
-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나. 관계법령 : 「도시철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다. 예산조치 : 관계부서와 협의 필요
- 라. 기 타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제1항제1호가목에 “(1),(2),(3)”을 각각 “1),2),3)”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려는 자가 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200만원(매입해야 하는 채권의 매입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매입금액 전부를 말한다)에 해당하는”을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도시철도법

제19조(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 및 방법으로 조달한다.

1.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의 자기자금(自己資金)
2. 도시철도를 건설·운영하여 생긴 수익금
3. 제20조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발행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차입 및 보조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 정부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차입·출자 및 기부
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7. 도시철도부대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20조(도시철도채권의 발행)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철도공사는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시철도공사는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도시철도채권의 원금 및 이자의 소멸시효(消滅時效)는 상환일(償還日)부터 기산(起算)하여 5년으로 한다.

⑤ 도시철도채권은 기본계획이 확정된 연도부터 그 연도의 도시철도 운영수입금이 그 연도의 도시철도 운영비용(원리금 상환액을 포함한다)을 최초로 초과하는 연도까지 발행할 수 있다.

제21조(도시철도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 호의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는 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제외한다.

-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건설도급계약(建設都給契約)을 체결하는 자
 - 4.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도시철도 건설·운영에 필요한 건설도급계약,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자
-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금액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3조(도시철도채권의 발행 방법 및 이율) ①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하여 발행한다.

② 도시철도채권의 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가 발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이율
2.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경우: 연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율
3. 도시철도공사가 발행하는 경우: 연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도시철도공사의 규칙으로 정하는 이율

제14조(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금액) 법 제21조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대상별 매입 금액은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대상별 매입 금액의 범위(제14조 관련)

매입 대상	매입 금액의 범위
1. 자동차등록(법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을 신청하는 자 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자동차는 제외한다) 1) 신규등록 가)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1) 소형(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9

(2) 중형(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다만,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2
(3) 대형(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것)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20
나)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외의 자동차	
(1) 소형(배기량 1,000cc 이상 1,600cc 미만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9
(2) 중형(배기량 1,600cc 이상 2,000cc 미만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다만,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2
(3) 대형(배기량 2,000cc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것)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20
(4) 다목적형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
2) 이전등록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6
나. 사업용 승용자동차(사업용 다목적형 자동차와 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
다. 사업용 다목적형 자동차의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2
라. 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1) 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승용자동차 및 소형 승합자동차(승차정원이 11명 이상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로서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가) 신규등록	
(1) 비사업용	대당 390,000원
(2) 사업용	대당 130,000원
나) 이전등록	
(1) 비사업용	대당 130,000원
(2) 사업용	대당 45,000원
2) 중형 승합자동차(승차정원이 16명 이상 35명 이하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	

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미만인 것)		
가) 신규등록		
(1) 비사업용	대당 650,000원	
(2) 사업용	대당 215,000원	
나) 이전등록		
(1) 비사업용	대당 215,000원	
(2) 사업용	대당 70,000원	
3) 대형 승합자동차(승차정원이 36명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가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가) 신규등록		
(1) 비사업용	대당 1,300,000원	
(2) 사업용	대당 435,000원	
나) 이전등록		
(1) 비사업용	대당 435,000원	
(2) 사업용	대당 145,000원	
마. 화물자동차		
1) 소형(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가) 신규등록		
(1) 비사업용	대당 195,000원	
(2) 사업용	대당 65,000원	
나) 이전등록		
(1) 비사업용	대당 65,000원	
(2) 사업용	대당 20,000원	
2) 중형(최대 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가) 신규등록		
(1) 비사업용	대당 390,000원	
(2) 사업용	대당 130,000원	
나) 이전등록		
(1) 비사업용	대당 130,000원	
(2) 사업용	대당 45,000원	
3) 대형(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가) 신규등록		
(1) 비사업용	대당 650,000원	
(2) 사업용	대당 215,000원	
나) 이전등록		

(1) 비사업용	대당 215,000원
(2) 사업용	대당 70,000원
바. 특수자동차	
1) 소형(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가) 신규등록	
(1) 비사업용	대당 195,000원
(2) 사업용	대당 65,000원
나) 이전등록	
(1) 비사업용	대당 65,000원
(2) 사업용	대당 20,000원
2) 중형(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가) 신규등록	
(1) 비사업용	대당 390,000원
(2) 사업용	대당 130,000원
나) 이전등록	
(1) 비사업용	대당 130,000원
(2) 사업용	대당 45,000원
3) 대형(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가) 신규등록	
(1) 비사업용	대당 650,000원
(2) 사업용	대당 215,000원
나) 이전등록	
(1) 비사업용	대당 215,000원
(2) 사업용	대당 70,000원
2. ~16. (생략)	

※ 비고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가. ~ 차. (생략)

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 등록(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려는 자가 위 표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200만원(매입해야 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도시철도채권의 매입금액 전부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타. (생략)

3. (생략)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